

의안번호	제2902호
의 결	. . .
연 월 일	(제 회)

의결사항	
------	--

고성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우정욱 의원 등 6인
발의연월일	2025. 2. 18.

고성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정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902
----------	------

발의연월일 : 2025. 2. 18.

발 의 자 : 우정욱, 김석한, 이쌍자,
김향숙, 정영환, 김원순
의원(6인)

1. 제안이유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정비계획 수립·시행 및 빈집실태조사에 관한 조문 내용을 명확히 정립하고, 빈집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복리 및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빈집의 활용”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한 조문 내용 명확화
(안 제5조)

다. 빈집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규정 신설(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농어촌정비법」

나. 입법예고: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5-7호

- 예고기간: 2025. 2. 18.(화) ~ 2025. 2. 24.(월)[6일간]

-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 의견 없음

4. 본문: 붙임과 같음

고성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빈집의 활용”이란 빈집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공동 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의 제목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원계획”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 수립·시행할 수 있다”를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을 “정비계획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빈집정비 및 활용의 기본방향
2. 빈집의 현황 및 실태
3. 빈집의 철거·개축·수리·활용 등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4.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5.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시행 및 빈집의 관리·정비를 위하여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한다.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제7조,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빈집의 활용) ① 군수는 빈집을 매입하거나 소유자와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1.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귀농·귀촌인, 한부모가족, 고령자 등 성별·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2.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년시설
3.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공용텃밭 등 주민복지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 또는 이용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지도·감독) 군수는 빈집의 활용·관리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2. (생략)</p> <p><u><신설></u></p>	<p>제2조(용어의 정의)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u>“빈집의 활용”이란 빈집정비 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u></p>
<p>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빈집정비를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 수립·시행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u>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u></p> <p>2. <u>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u></p> <p>3. <u>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 등에 관한 사항</u></p>	<p>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 ① ----- ---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u>정비계획에는</u> ----- ----- -----.</p> <p>1. <u>빈집정비 및 활용의 기본방향</u></p> <p>2. <u>빈집의 현황 및 실태</u></p> <p>3. <u>빈집의 철거·개축·수리·활용 등 빈집정비사업의 추진</u></p>

4.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신 설>

5. (생략)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 4. (생략)

② (생략)

<신 설>

계획 및 시행방법

4.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5.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③ 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시행 및 빈집의 관리·정비를 위하여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등) ① -----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조(빈집의 활용) ① 군수는 빈집을 매입하거나 소유자와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1.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귀농·귀촌인, 한부모가족, 고령자

제7조 (생략)

<신설>

<신설>

등 성별·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2.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년시설

3.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

시설, 공용주차장, 공용텃밭

등 주민복지 증진 또는 공공

의 목적을 위한 시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 또는

이용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

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 (현행 제7조와 같음)

제9조(지도·감독) 군수는 빈집의

활용·관리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

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

야 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

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관 계 법 령(발췌)

□ 농어촌정비법

제6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5년 단위의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2024. 1. 2.>

1.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방향
2. 빈집의 현황 및 실태
3. 빈집의 철거·개축·수리·활용 등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
4.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5.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빈집우선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관할 구역 내에 제64조의7에 따른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7. 그 밖에 빈집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군·구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시·도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시·도지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24.>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만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만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3. 제1호에 따른 농촌과 제2호에 따른 어촌 모두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매년 빈집정비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13.>

⑤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4. 13.>

제64조의2(빈집실태조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 및 이행

계획의 수립·시행, 빈집의 관리·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빈집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

1. 4. 13.>

1. 빈집의 소재 현황

2. 빈집의 관리 상황 및 방치기간

3. 빈집의 소유자 및 권리관계

4. 빈집 및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의 현황

5. 그 밖에 빈집 발생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빈집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빈집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의6(빈집의 매입 및 활용) 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시·도지사등”이라 한다)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매입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8.>

1. 생활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

2. 농어업 분야 내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득한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활용

- ② 시·도지사등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내외국인근로자의 사용자가 빈집을 임차하여 내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활용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해당 빈집을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다. <신설 2023. 3. 28.>
- ③ 빈집의 매입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3. 28.>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매입한 빈집의 활용 및 임대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3. 3. 28.>